

## ◇◇학교 교치의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

<b>소송종류</b>	민사소송	<b>법원명</b>	인천지방법원
<b>사건번호</b>	2015가단 ○○○○○○	<b>사건유형</b>	손해배상
<b>원고</b>	○○○	<b>피고</b>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1
<b>판결선고일</b>	2016. 5. 4.	<b>비고</b>	
<b>사건개요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고가 ◇◇학교 □□부 소속 당시, 피고 교치는 ○월부터 ○월까지 학교 □□부실 및 사무실에서 수시로 엉덩이와 허벅지, 성기를 몽둥이로 때리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과 성추행, 모욕을 반복하며 원고를 괴롭혔음.</li> <li>- 인천광역시는 피고 교치의 사용자로서 피고 교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제기.</li> </ul>		
<b>주 문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고 교치는 원고에게 7,500,000원을 지급하되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다만, 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한 경우에는 위 금액이 아닌 1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6.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지급.</li> <li>2. 피고 인천광역시는 피고 교치와 공동하여 제1항의 돈 중 3,750,000원을 2016. 7. 31.까지 지급한다. 다만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하여 2016. 8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지급.</li> <li>3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,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.</li> <li>4. 원고와 조정참가인 및 피고들은 양자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며, 양자 사이에 이 사건 조정조서 내용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.</li> </ol>		
<b>청구취지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고들은 각자 원고○○○에게 50,000,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15%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</li> <li>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</li> <li>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</li> </ol>		